

건설업 폐업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,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3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□ 폐업신고 처리 사항

상호명	대표자	등록말소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폐업사유	등록말소일
태양설비	윤옥재	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(서대문07-12-02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0가길 72, 1층 (북가좌동)	회사 사정 (사업 포기)	2024.10.31.

끝.